

韓國人の 婚姻行態 變化分析

李三植

(統計廳 人口統計課)

《目次》

I. 序 論

II. 研究資料 및 方法

III. 分析結果

IV. 結 論

I. 序 論

결혼이란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또는 관습적인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집합개념을 원자적(atomic) 측면으로 본다면 가족의 집합개념은 분자적(molecular)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은 기초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형성하며, 출산과 양육 그리고 부양관계를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가족(family of orientation)을 벗어나서 배우자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출산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형성하게 된다(김유경, 1987).

결혼은 인구변동과 사회구조 변동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는 가족의 외적인 조건의 변화는 물론 가족 기능의 역할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혼 개념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이혼율이 증가됨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관습에 의해서건 또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건 간에 대부분은 결혼을 하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결혼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최근에 이룰수록 젊은층에서 미혼율 또는 이혼율의 상승은 결혼의 안정성에 역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통혼이 제도적 또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이루어 왔다면 오늘날에는 자율성에 의한 상대적 갈등이 가족생활의 불안과 해체를 가능케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혼인형태의 변동은 사회적 및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가 중시되고 있다. 초혼연령

의 변동이 지니는 사회학적 의미는 초혼연령이 가족의 생활주기상 가족형성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히, 여자의 초혼연령은 재생산기간 및 연령패턴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삼식, 1989). 이 외 결혼기간, 부부간 연령차이, 이혼율 등의 결혼행태도 최근 20여년 간의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여 왔다.

1960년대초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합계출산율은 80년대 중반에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에 도달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1990년대 초에 1%미만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에 정지증가율 0%(zero population growth rate)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통계청, 1991a).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인구규모를 억제하는 양적 인구정책에서 인구분포, 노령화 현상 등의 질적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경제기획원, 1986). 특히 가족의 형성 및 해체와 직접 관련된 결혼과 이혼은 인구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 및 인구변동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결혼행태 연구는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결혼연구는 출산력 연구와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이 비가족 분야의 대처역할로 작용하면서 초혼연령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가 출산력 저하에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 주요 관심이었다(Bumpass, 1969; Lee, 1989). 그러나 본 연구는 결혼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근대화·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결혼조건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지에 관한 결혼행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연구자료

인구동태신고율의 저조로 인하여 과거의 혼인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 중 혼인에 관한 자료는 조사시점 인구의 혼인상태(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를 조사한 관계로 혼인연령, 혼인표 등 주요지표를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밖에는 없는 한계성이 있다. 한편 표본조사 자료는 자료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혼행태 분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근 국민의 호적신고(또는 인구동태신고)율이 향상됨에 따라 인구동태신고자료를 이용한 혼인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1970부터 1990년까지 21년간의 혼인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혼인신고자료는 국민의 호적(또는 인구동태) 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혼인통계의 질은 신고자의 지연신고와 왜곡신고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20년간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왜곡신고 비율은 아주 미세하나 지연신고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혼인통계작성에 제약이 되므로 지연신고분을 감안한 발생건수의 추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는 연도별 혼인의 규모와 혼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소위 “누적 등비율 추정법”을 이용하여 발생연도별 혼인건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혼인행태분석은 실제로 신고된 건수(지연신고포함)만을

이용하였는데 최근 연도일수록 발생건수의 일부분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지연 신고분이 추가될 때의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가. 혼인건수 추정

부록1 은 발생년도별 혼인건수의 신고년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혼인은 발생후 오랜 기간을 통하여 신고되는데, 대부분은 발생시점에 가까운 기간(년도)에 신고되며, 연도가 경과될 수록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연신고는 발생 후 년도가 많이 경과할수록 급속히 적어지는데, 1970년도에 발생한 혼인의 경우 12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된 건수는 1990년까지 21년간에 걸쳐 신고된 총신고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을 미루어 볼 때 혼인이 발생한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지연신고될 건수는 거의 무시할 정도이므로 발생 후 20년간에 걸쳐 신고된 총건수를 각 발생년도의 총건수로 간주할 수 있겠다. 따라서 1970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는 1970년 발생 후 20년이 경과한 1990년까지 총신고된 건수로 간주 할 수 있겠다. 즉, 1970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는 $TM(70) = \sum_{i=0}^{20} RM(70+i)$ (여기서 $TM(70)$ 은 1970년 발생 총혼인건수, $RM(70+i)$ 은 1970년에 발생하였으나 $(70+i)$ 년도에 신고된 건수임)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t 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는 $TM(t) = \sum_{i=0}^{20} RM(t+i)$ 로 나타낼수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 1971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는 20년째 지연신고분인 1971년 발생 1991년 신고분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관계로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2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는 발생이후 19년째 지연신고분과 20년째 지연신고분인 1972년 발생된 혼인의 1991년과 1992년 신고분이 아직 신

고되지 않아 구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TM(73)$, $TM(74)$, \dots , $TM(90)$ 의 발생건수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y 년(추정년도)현재에 t 년도에 발생한 총혼인건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지연 신고분은 y 년이후 $(20-y+t)$ 년간의 지연신고분이다.

어느 한 발생년도의 혼인건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연신고분이 모두 모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수 산출에 정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자료의 시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수추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연구에서 사용한 “누적등비율 추정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년도 y 가 1990년, 그리고 발생년도 t 가 1970년일 때 1970년에 발생한 혼인건수를 신고 년도별로 배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발생 이후 각 신고년도까지의 누적신고건수를 구한다. 1970년 발생년도의 경우에는 기준년도 1990년까지의 모든 신고분의 합이 총건수가 되므로 (1970년에 발생하여 1990년까지 신고된 총건수=1970년 발생 총건수가) 된다. 1990년까지 신고된 누적건수를 분모로 각 지연신고년도까지의 누적건수를 나누어 신고년도별 누적건수비율을 산출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1970년 발생건수의 신고년도별 누적신고건

수 $CM(70,i) = \sum_{k=0}^{20} RM(70+k)$ 이며 1970년 발생건수의 신고년도별 누적비율 $CR(70,i) = CM(70,i) / \sum_{i=0}^{20} RM(70+i)$ 와 같다. 그러나 1971년 발

생건수의 경우에는 마지막 년도($i=20$)인 1991년의 지연신고분 $RM(71+20)$ 이 아직신고되지 않아 $CM(71,20)$ 과 $CR(71,20)$ 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CR(71,19)^* = CR(71,19)$ 로 가정하여 $CM(71,20)^* = CM(71,19) / CR(70,19)$ 로 구한다. 이 산식을 이용하여 1971년 발생혼인 건수의 년도별 누적신고 및 누적비율을 구한

다. 1972년 발생건수는 1990년 현재 $i=20$ 이 되기까지 향후 2년간 지연신고분(1991, 1992년분)이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년도별 누적신고건수와 누적신고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CR(72,18)=CR(71,18)$ 로 가정하여 총건수 $CM(72,20)^*=CM(72,18)^*/CR(71,18)$ 로 구한다. 한편, $CM(72,19)^*=CM(72,20)^*\times CR(71,19)^*(=CR(72,19)^*)$ 로 구한다.

즉 각 발생년도(t)의 최종 누적 지연신고건

수를 직전발생년도(t-1) 동일년차의 누적신고비율로 나누어 총신고건수를 추정하며, 이 총신고건수를 각 신고년차의 누적비율에 곱하여 지연신고년도별 누적건수를 구한다. 부록 2와 부록 3은 위의 “누적비율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신고년도별 누적건수와 누적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는 발생년도별 1990년까지 신고된 총신고건수와 위 추정법을 이용하여 구한 추정발생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Trend in Marriages and Marriage Rates:

Year	Population('000) ¹⁾	Marriages ²⁾	Marriage Rate
1970	32,241	300,767	9.3
1971	32,883	243,536	7.4
1972	33,506	247,739	7.4
1973	34,103	261,924	7.7
1974	34,692	262,273	7.6
1975	35,281	285,789	8.1
1976	35,849	387,675	10.8
1977	36,412	305,348	8.4
1978	36,969	345,509	9.4
1979	37,534	355,891	9.5
1980	38,124	405,559	10.6
1981	38,723	367,178	9.5
1982	39,326	364,543	9.3
1983	39,910	371,605	9.3
1984	40,406	364,001	9.0
1985	40,806	379,318	9.3
1986	41,184	381,340	9.3
1987	41,575	380,220	9.2
1988	41,975	391,793	9.3
1989	42,380	401,759	9.5
1990	42,869	404,931	9.5

Source : 1) Population project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2) Estimated based on the vital statistics, NSO, 1991

나. 추정건수의 확정

위 추정법을 이용하여 발생건수를 추정할 때 매년 추정 때마다 건수가 달라지고 있다. 신고년도별 실제신고건수(누적신고건수)의 비율을 보면 발생 후 5년 경과까지 누적신고가 총 추정건수의 98% 수준이며, 4년 경과까지가 97% 수준 그리고 3년 경과 후의 총누적 신고가 총 추정건수의 90% 수준으로 이러한 패턴은 80년대에 들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혼인발생 후 5년까지는 총건수의 98%가 신고를 하며, 이후 16년간에 걸쳐 추가로 신고될 건수는 총 추정발생건수의 2% 미만에 불과하므로, 자료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정된 발생건수를 확정치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정된 건수는 잠정치로 하여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 추정년도마다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Ⅲ. 分析結果

1. 혼인율 변동

혼인수, 특히 초혼수는 새로운 출산가족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구증가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리고 주택의 신수요자로서 주택정책의 수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가구 관련용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혼인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령구조로서 결혼적령 인구 연령층의 인구수에 따라 좌우된다. < 표 1 >에 따르면 어느 특정년도를 제외하고는 혼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70년대와 80년초반에는 크나 최근에 들어 작아지면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70년대 전반에 혼인수가 25만 쌍내지 30만쌍 수준이었으나 70년대 후반에서

는 35만쌍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40만쌍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수)도 70년초 7.5수준에서 80년대 후반에 9이상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70년대에 혼인수가 다소 불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6·25동란의 영향으로 저출산한 연령층 인구와 전후 베이비붐 시대의 다출산 연령층인구 등 격동시대에 태어난 연령층인구가 이 시기에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에 들어 혼인수의 증가폭이 아주 작으며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때의 결혼적령인구는 주로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구증가율 추이를 고려하여 볼 때 결혼수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다가, 출산아 수가 감소한 80년대 중반에 출생한 인구가 결혼적령기에 도달하는 2005년 이후에는 절대적인 결혼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할 결혼의 감소는 곧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기회와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가족의식의 결여,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 등으로 인한 독신자비율의 증가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나라보다 출산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었던 일본(1989년 5.8), 네덜란드(1987년 6.0)보다는 높으며, 출산력 감소시기가 비슷한 대만(1989년 7.9), 싱가포르(1989년 8.8)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록 출산력 저하가 아주 오랜 시기에 이루어져 왔으나 높은 이혼율에 따른 재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10.0(1988)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혼의 증가에 따른 재결합 형태의 증가가 출산력 변동과

함께 혼인율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혼인형태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시대는 적은 자녀수와 낮은 가족결합도, 높은 이혼율의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출산력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혼 적령 인구가 감소하여 왔으나, 이혼에 따른 재혼 특히 남녀 각자가 자기자녀를 데리고 다시 결합하는 “재결합 가족(inter-penetrating family)”의 증가로 인하여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혼인율(1988년 10.0)을 보여왔다. 비록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와 핵가족시대의 부정적인(negative) 영향으로 이혼에 의한 가족의 해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 및 경제력 향상과 자아의식의 성숙은 인생의 이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고 있다. 남편이 사별하는 경우에 “수절”을 강조하던 전통관의 붕괴는 여력과 기회가 닿으면 재혼을 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는 홀아비 또는 과부의 재혼증가도 사

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결혼 풍습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혼인형태도 종래의 처녀·총각이 만나서 이루었던 결혼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처녀와 총각이 결합한 결혼은 70년대초에 94%로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9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남녀 중 적어도 한편이 혼인을 한 적이 있는 남녀의 결혼은 70년대초 6% 수준에서 최근에 10%로 상승하여 혼인 10건 중 1건이 처녀와 총각의 결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가 재혼인 재결합 가족형태도 70년대초 2% 수준에서 최근 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록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형태의 혼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 혼인증 초혼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낮아지고 있다 <표 3>. 여자 초혼비율이 남자 초혼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전통적으로 사별 또는 이혼녀의 재혼이 남자보다 어려운 사회구조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여 볼때 농촌에서 초혼비율이 더 높은 것도 전통적인 유교적 혼인관이 도

Table 2. Percentage Distribution of Marriages by Type of Marriage.

Type of Marriage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ridegroom - Bride						
1st - 1st	94.1	92.6	92.7	91.0	90.6	91.2
2nd - 1st	3.0	3.6	3.3	3.6	3.5	3.2
1st - 2nd	0.5	0.8	1.1	1.6	1.9	1.8
2nd - 2nd	2.4	3.0	2.9	3.8	4.0	3.8

Note : 2nd marriage includes 2nd and more marriages.

Table 3. Proportion of First Marriage by Place of Residence and Age at Marriage:

Characteristics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Whole country :						
Bridegroom	94.6	93.4	93.8	92.6	92.5	93.0
Bride	97.1	96.2	95.9	94.6	94.1	94.4
Place of Residence :						
bridegroom						
Urban	92.4	91.6	92.4	91.5	91.8	92.6
Rural	95.9	94.8	95.6	94.5	94.1	94.2
Bride						
Urban	95.7	94.8	94.9	93.5	93.3	93.8
Rural	97.8	97.0	97.0	96.0	95.4	95.6
Age at Marriage :						
Bridegroom						
15~19	99.6	99.4	99.6	99.7	99.8	100.0
20~24	99.3	99.1	99.2	99.3	99.3	99.5
25~29	98.5	98.4	98.3	98.1	98.3	98.5
30~34	89.9	88.5	87.1	86.1	87.5	89.1
35~39	59.5	55.5	51.2	44.4	46.7	49.8
40~44	36.5	29.5	27.3	22.1	22.3	22.0
45~49	29.3	18.6	17.0	13.3	11.7	13.4
50+	19.4	12.4	14.1	7.6	7.0	6.8
Bride						
15~19	99.7	99.6	100.0	99.7	99.8	99.8
20~24	99.4	99.3	99.2	99.1	99.2	99.3
25~29	96.2	95.6	95.2	94.9	95.5	96.1
30~34	74.2	70.9	66.1	66.1	68.3	69.1
35~39	54.7	49.0	44.3	39.2	39.1	41.3
40~44	44.2	38.2	36.2	28.8	26.7	27.1
45~49	37.0	34.1	35.6	27.6	24.6	21.2
50+	32.0	30.9	34.4	24.6	24.4	22.8

Note : Proportion of remarriage = 1 - proportion of first marriage

시보다 농촌에서 더 깊게 뿌리 내려져 왔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비교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유교사상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한국 이외 대만(남자 93.1%, 여자 92.9%(1989)), 싱가포르(남자 92.4%, 여자 93.7%(1989년))의 초혼비율이 미국(남자 65.8%, 여자 84.2%(1986년)), 네덜란드((남자 82.9%, 여자 84.2%(1986년)))등 서구사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형태를 혼인남녀의 혼인연령별로 살펴보

면, 남자의 경우 35세 이전에는 주로 초혼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후의 연령층에서 초혼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30세 이전에 혼인이 주로 초혼인 반면 이후 연령층에서 혼인은 연령의 상승과 함께 초혼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35세 이상 남자의 재혼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30세이상 여자의 재혼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35세이상 남자 또는 여자 혼인의 반 이상이 재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Percentage Distribution of Marriages by Age at First Marriage ;

Age at First Marriage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Bridegroom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3.7	3.0	2.2	1.4	0.9	0.6
20~24	26.7	25.7	25.9	23.2	16.4	15.2
25~29	54.0	56.6	58.9	62.3	65.9	65.6
30~34	13.2	12.2	11.1	11.3	14.9	16.6
35~39	1.6	1.8	1.3	1.3	1.4	1.5
40~44	0.4	0.4	0.4	0.3	0.3	0.3
45~49	0.2	0.2	0.1	0.1	0.1	0.1
50+	0.2	0.1	0.1	0.1	0.0	0.1
Bride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23.4	20.6	11.4	8.6	5.4	4.0
20~24	56.7	57.8	61.5	58.6	52.7	52.7
25~29	16.8	18.1	24.2	29.2	37.1	38.5
30~34	2.1	2.3	1.9	2.6	3.7	2.8
35~39	0.6	0.7	0.5	0.5	0.6	0.7
40~44	0.2	0.3	0.2	0.2	0.2	0.2
45~49	0.1	0.1	0.2	0.2	0.1	0.1
50+	0.0	0.1	0.1	0.1	0.2	0.0

3. 혼인 연령

가.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가족의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상의 가족형성 시기와 일치하여 가족연구의 중요한 요소이다. 배우자의 선택은 대개 일정한 연령범위에서 개인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비교적 동질의 특성을 보여 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조혼이 일반적이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조혼은 고려시대의 경우는 원나라에 대한 공녀(貢女)정책에서, 조선시대는 왕비간택이나 양반계급의 지위 유지 또는 양반계급의 부양부담을 덜기 위한데서 그 동기를 엿볼 수 있다(이해영외, 1970).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조혼 원인은 높은 사망율을 유지했던 전통사회에서 가계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던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Song, 1970).

근대사회에서 초혼연령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2년 남자 26.7세, 여자 22.6세에서 1989년에는 남자 27.8세, 여자 24.8세로 지난 20년간 남자는 1.1세, 여자는 2.2세가 늘어졌다. 연령별 초혼분포<표 4>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5세미만의 연령층 구성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25세이상 특히 25~3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15~19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70년대초 25% 수준이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5%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20~24세 연령층의 구성비도 80년대초를 고비로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25~29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큰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결혼적령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초혼연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5, 6>.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거주자일수록 교육기간이 길고, 교육기간이 긴 만큼 초혼연령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 초혼연령은 도시지역에서 70년대초 27.4세에서 최근에 28.0세로 0.6세가 높아진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26.3세에서 27.3세로 1.0세가 높아져 도시와 농촌간 초혼연령 차이도 1.1세에서 0.7세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초혼연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도시와 농촌간 초혼연령 차이는 70년대초 1.4세에서 최근 1.1세로 줄어들었다. 도·농간 초혼연령 차이 감소이유는 농촌에 도시적 특성이 유입하고 있으며, 또 농촌여성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혼인적령기 인구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촌남녀의 혼인이 다소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시도별로 살펴 보면, 초혼연령은 도시화 정도와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 남녀의 초혼연령이 각각 28.3세와 25.6세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 5대 도시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도간 초혼연령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강원, 전남 등 비교적 초혼연령이 낮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보다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리고 시·도 중에서 도시화율이 높은 시·도에서 초혼연령이 높은 이유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교육기회가 높을 뿐더러, 특히 결혼적령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집값 등 생활비가 높아 젊은이들의 결혼준비기간이 긴 반면,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가 낮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보다 관례화되어 있어 결혼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은 배우자 선택의 주요한 조건 중의

Table 5.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Wole country						
Bridegroom	26.7	26.8	26.4	27.0	27.6	27.8
Bride	22.6	22.8	23.2	24.1	24.7	24.8
Place of Residence						
Bridegroom						
Urban	27.4	27.4	26.8	27.2	27.8	28.0
Rural	26.3	26.3	26.0	26.5	27.1	27.3
Bride						
Urban	23.5	23.7	23.8	24.6	25.0	25.2
Rural	22.1	22.3	22.6	23.4	24.0	24.1
Province						
Bridegroom						
Seoul	27.7	27.7	27.2	27.6	28.1	28.3
Pusan	27.5	27.3	26.7	27.2	27.7	28.2
Taegu	27.7	28.3	26.4	27.0	27.5	27.7
Inchon	27.4	27.9	26.6	27.1	27.6	28.0
Kwangju	—	—	—	—	27.6	28.1
Taejon	—	—	—	—	—	28.0
Kyeonggi	27.0	27.0	26.3	26.9	27.5	27.9
Kangwon	26.4	26.2	25.7	26.5	27.3	27.5
Chungbuk	26.3	26.1	25.7	26.3	26.9	27.2
Chungnam	26.4	26.7	26.0	26.5	27.1	27.2
Chonbuk	26.6	26.4	26.4	26.7	27.3	27.6
Chonnam	26.2	26.6	26.2	26.6	27.1	27.4
Kyongbuk	26.2	26.3	26.0	26.4	27.1	27.3
Kyongnam	26.6	26.6	26.2	26.7	27.2	27.5
Cheju	26.0	26.5	26.1	26.8	27.7	27.8
Bride						
Seoul	24.0	24.1	24.3	25.0	25.5	25.6
Pusan	23.3	23.4	23.6	24.5	24.9	25.1
Taegu	26.3	25.8	23.6	24.3	24.9	25.1
Inchon	24.5	26.1	23.5	24.3	24.9	25.0
Kwangju	—	—	—	—	25.0	25.0
Taejon	—	—	—	—	—	25.0
Kyeonggi	22.8	22.9	23.1	23.8	24.6	24.8
Kangwon	21.4	21.6	22.4	23.4	24.1	24.4
Chungbuk	22.2	22.2	22.6	23.4	24.0	24.2
Chungnam	22.5	22.7	22.8	23.7	24.2	24.2
Chonbuk	22.3	22.6	22.8	23.7	24.3	24.5
Chonnam	21.9	22.3	22.6	23.5	24.0	24.2
Kyongbuk	22.2	22.5	22.7	23.5	24.1	24.2
Kyongnam	22.2	22.5	22.8	23.7	24.2	24.3
Cheju	23.1	23.3	23.4	24.2	25.1	25.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Educational Attainment						
Bridegroom						
Never attending	27.9	28.2	28.6	30.1	30.6	32.0
Primary	26.4	26.3	26.1	27.1	28.4	29.1
Secondary	26.5	26.7	26.2	26.7	27.4	27.6
College & over	28.3	28.3	27.4	27.5	27.9	28.1
Bride						
Never attending	23.4	24.6	25.6	28.3	30.8	31.3
Primary	21.9	22.1	22.3	23.6	25.1	25.7
Secondary	23.1	23.1	23.2	23.9	24.3	24.5
College & over	24.8	24.9	24.9	25.3	25.7	25.8

Table 6. Percentage Distribution of Remarriages by Age at Remarriage ;

Age at Remarriage	Year of Re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Bridegroom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0.3	0.2	0.2	0.1	0.0	0.0
20~24	3.2	3.1	3.0	2.2	1.4	1.1
25~29	14.4	13.3	15.9	15.5	13.9	13.0
30~34	25.7	22.2	25.0	22.9	26.2	27.3
35~39	19.4	20.1	19.5	20.1	20.0	20.1
40~44	13.0	13.3	13.4	13.6	13.6	14.3
45~49	8.9	9.3	8.5	9.4	9.8	9.3
50~54	6.4	7.3	5.4	6.2	6.0	6.3
55~59	4.3	5.1	3.9	4.2	4.0	3.8
60+	4.3	6.1	5.2	5.9	5.0	4.9
Bride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	2.7	2.2	0.9	0.5	0.2	0.1
20~24	12.4	10.6	11.7	9.6	6.4	6.1
25~29	22.4	20.9	28.5	27.5	27.9	26.5
30~34	24.4	23.0	22.2	23.2	27.3	29.0
35~39	16.8	17.7	15.4	14.9	15.4	15.8
40~44	10.3	11.4	9.7	10.1	9.3	9.4
45~49	6.2	7.2	5.4	6.5	6.6	6.6
50~54	2.8	3.9	3.6	3.7	3.7	3.4
55~59	1.3	2.0	1.5	2.4	2.0	1.8
60+	0.7	1.1	1.1	1.6	1.2	1.3

하나로서 교육정도에 따라 혼인연령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70년대초 불취학자를 제외하면 고학력 소지자일수록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1972년 남자의 경우 국민학교 학력소지자가 26.4세 인데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28.3세로 2세 정도가,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1.9세와 24.5세로 각각 나타나 3세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의 교육기간의 연장이 직접적으로 혼인연령을 연장시킬 뿐더러, 이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가 만혼경향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정도와 초혼연령이 정관계(positive relationship)라는 사실은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불취학과 국민학교의 학력을 가진 경우 초혼연령 상승폭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보다 커, 최근에는 불취학자의 초혼연령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민학교 학력소지자의 초혼연령이 높고, 대학교이상과 중·고등학교 학력소지자의 초혼연령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의 경우 불취학자의 평균 초혼연령(1989년)은 32.0세, 국민학교 교육정도 수준이 29.1세, 중·고교 수준이 27.6세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의 경우도 같다. 이렇게 교육정도와 초혼연령간의 관계가 반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저학력이 배우자 선택에 큰 장애가 되어 혼인시기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기되기 때문이며 반면 고학력자일수록 연애결혼이 쉽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교육 경제활동 기회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미혼여성의 경제적 독립 능력 상승이 초혼연령을 계속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고학력자의 취업이 어려워져 졸업 후 상당기간을 소요한 후 취업을 하게 되며, 농촌남자의 경우 배우자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도 초혼연령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이 외 집값 상승도 역시 만혼경향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임신자녀 태울을 고려하여 남자 25-27세, 여자 23-25세가 결혼적령기이다. 만혼은 산모에게 신체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만혼은 가임기간을 줄여 궁극적으로 출산력 저하를 통하여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 재혼연령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혼하는 사람도 최근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우리사회의 한 변모양상이다. 독신노인의 재혼 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재혼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혼을 거의 최악시 하다가 해온 우리의 전통적 가정관이 해방 이후 반세기를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혼과 더불어 재혼의 숫적인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 및 태도 변화도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남자의 재혼<표 6>은 1989년에 30~34세 연령층의 재혼이 전체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5~39세가 약20%, 그리고 40~44세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25~29세와 45~49세는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재혼이 전체의 30%, 24%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에서 15%와 10%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반면, 25세미만의 연령층에서는 6%에 불과하였다.

남자 25세미만 저연령층에서는 재혼이 감소하고 3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재혼연령<표 7>이 남자는 1972년 39.0세에서 1989년 39.5세로, 그리고 여자는 33.7세에서 34.9세로 높아졌다. 남자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의 재혼 구성비가 다소 높아지고 있

Table 7. Mean Age at Remarriage;

	Year of Re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Bridegroom	39.0	39.9	38.9	39.5	39.4	39.5
Bride	33.7	34.7	33.9	34.7	34.8	34.9

는데, 이는 사별인구의 재혼증가에 기인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이유는 평균수명 차이에 따른 고연령 남성인구의 부족 및 사회적 인식 등의 제약으로 여자의 재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성혼과정

결혼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관습 또는 제도화(최재석, 1987)하며, 그러한 형식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갖는다(최신덕, 1979).

전통사회의 결혼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계 계승이 우선되었고, 부부는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또는 성적 도구로서의 의미가 강했다(유영주, 1980). 그러나 근대사회의 결혼은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제도나 가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율성이 강조되고 그 형식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혼을 부모에 의한 조혼으로 본다면 근대혼은 당사자 자신에 의한 만혼으로, 성혼범위도 계급혼이 인물본위로, 또 결혼조건은 가문중시에서 개인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배우자와의 인연이 부모나 친척, 또는 직장상사, 학교선배 등의 소개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본인 당사자들끼리의 만남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서 중매(arranged match)와 연애

(love match)로 구분된다. 이외 배우자간의 인연을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교제기간을 거친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혼하는 절충형태(mixed match)가 있다.

최근에 이를수록 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기회의 확대에 따라 이성간의 접촉기회가 용이해져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다<표 8>. 반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중매로 맺어지는 비율은 1981년에는 58.4%에서, 1989년에는 39.4%로 감소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초에 배우자와의 인연이 연애로 맺어지는 비율은 36.3%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50%이상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여 보면 1989년에 도시에서 연애로 배우자의 인연이 맺어지는 비율은 58.6%로 농촌의 44.6%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에서 결혼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모에게서 결혼당사자에게로 이행되고 있음을 볼 수있다. 또 최근의 결혼은 주로 연애로 인연을 맺는다 해도 어느 정도 교제기간을 거친 후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혼이 결정되는 이른바 전통혼과 자유혼의 절충형태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결혼에서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의 결정권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양되고 당사자의 의견이 점차 존중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결혼은 당사자의 전적인 결정에 의한 형태라기보다는 부모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모자식간 화합형이 지배적이라 할 수

Table 8. Percentage Distribution of Marriages by type of Match;

Type of Match	Year of Marriage			
	1981	1985	1988	1989
Whole country	100.0	100.0	100.0	100.0
Love	36.3	45.5	53.6	54.7
Arranged	58.4	48.7	40.6	39.4
Mixed	5.3	5.8	5.8	5.9
Urban	100.0	100.0	100.0	100.0
Love	42.3	50.5	57.9	58.6
Arranged	51.1	42.7	35.6	34.9
Mixed	6.6	6.8	6.5	6.5
Rural	100.0	100.0	100.0	100.0
Love	28.6	36.9	44.0	44.6
Arranged	67.9	59.1	51.7	51.1
Mixed	3.5	4.0	4.3	4.3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결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본인이 결정한 후 부모에게 승락을 받는 형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5. 결혼조건

결혼은 단순히 남녀간의 성애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혼조건이 전제되고, 이러한 조건은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제조건과 관련되어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개인특성으로 결혼은 인성(personality)은 물론 능력, 외모 등과 사회적 조건으로 학력, 재력, 지위 등이 중요시되며, 이러한 점은 남녀를 연결시키는 끈으로 작용한다 (Burgess 외, 1953).

가. 연령조건

배우자 선택에서 연령은 주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여자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의 선택을 기피한다. 5~6년

이상 연령차이는 오히려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여 갈등과 불화가 많을 것으로 여겨 기피한다. 사실 연령차이가 많을수록 이혼율도 높다 (통계청, 1991b). 결혼년도별로 보면 <표 9> 남자 또는 여자가 초혼일때 연령차이는 70년대 평균 4~5세에서 80년대에는 평균 3세 정도로 더욱 줄어들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년도별 그리고 초혼연령별로 보면 남자 15~19세를 제외한 남녀 모든 초혼연령층에서 연상의 남편 또는 연하의 부인을 선호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남자 15~19세 저연령층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여자가 연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결혼한 그리고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간 연령차이가 낮아지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부부간 연령차이는 더욱 뚜렷이 구별됨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89년 결혼한 남녀의 교육정도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에 신부와 연령차이는 2.8세에 불과한 반면 중·고등

Table 9. Mean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Whole country						
Bridegroom	4.3	4.2	3.4	3.0	3.0	3.1
Bride	4.5	4.4	3.5	3.2	3.1	3.2
Age at First Marriage						
Bridegroom						
15~19	-0.3	-0.4	-0.4	-0.7	-0.6	-0.6
20~24	2.1	2.0	1.6	1.2	0.9	0.9
25~29	4.7	4.5	3.7	3.1	3.0	3.0
30~34	7.2	7.0	6.6	5.5	5.0	5.0
35~39	9.2	8.8	8.6	7.6	6.8	6.4
40~44	10.7	10.4	10.1	9.1	8.7	8.1
45~49	12.9	12.5	13.0	11.5	10.9	10.8
50+	15.7	16.8	16.6	15.9	14.0	12.5
Bride						
15~19	6.5	6.3	5.5	5.9	5.9	6.1
20~24	4.2	4.2	3.6	3.5	3.9	4.0
25~29	2.7	2.6	2.0	1.8	1.9	2.0
30~34	3.2	3.1	2.2	1.8	1.4	1.2
35~39	4.7	4.3	4.0	3.2	2.2	2.1
40~44	6.5	6.1	4.7	4.5	3.6	3.4
45~49	5.1	6.6	6.7	4.9	5.7	5.2
50+	1.5	4.1	1.7	1.6	5.3	5.8
Educational Attainment						
Bridegroom						
Never attending	6.5	6.4	6.2	6.9	6.8	6.4
Primary	4.9	4.8	4.3	4.4	4.6	4.7
Secondary	4.2	4.2	3.5	3.3	3.3	3.4
College & over	4.2	4.1	3.2	2.8	2.8	2.8
Bride						
Never attending	6.1	6.2	5.9	6.3	6.1	5.9
Primary	4.8	4.7	4.2	4.4	4.6	4.6
Secondary	4.2	4.2	3.5	3.2	3.3	3.3
College & over	3.9	3.8	2.9	2.6	2.6	2.6

Note : Age difference = age at marriage of bridegroom - that of bride.

학교학력 남자의 연령차이는 3.4세, 국민학교 학력인 경우에는 4.7세, 불취학자인 경우 6.4세로 교육정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기회의 연장이 동년배와의 교제기회를 증가시켜 연애결혼을 함으로서 평

균적으로 평균 결혼연령 차이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랑·신부간 혼인연령 차이가 연애결혼인 경우가 중매인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보아 알 수 있다.

나. 교육조건

전통혼이 제도나 가문간에 이루어진다면 근대혼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율성이 강조되어 결혼조건도 가문 중심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격 등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배우자의 교육정도는 경제적 능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결혼조건이다. 교육정도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경우에 결혼하는 경우<표 10>가 1972년 전체 혼인중 72.0%로 나타났던것이 1989년에 80.7%로 계속 높아져 동일 학력 선호경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학력이 여자학력보다 높은 경우는 1972년에 21.4%에서 오히려 감소하여 1989년에는 16.2%였다. 그리고, 여자학력이 남자보다 높은 경우가 아주 낮게 나타나나 다소 높아지고 있다.

6. 계절별 혼인

전체혼인을 계절별로 보면<표 11> 70년대 초반에는 겨울철에 전체 혼인의 거의 40%가 가까이 행해졌고, 다음이 봄, 가을, 여름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로서의 풍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농번기인 봄, 여름, 가을에 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 혼례식을 회피하고, 농한기인 그리고 추수가 끝나 물자가 풍부한 겨울에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도시에서 봄철에 혼인을 많이 하는 반면 아직 농촌에서는 겨울철에 가장 혼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농업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계절의 구별은 점차 사라져, 개인의 생활여건과 개성에 따라 선호하는 계절에 혼인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봄철에 혼인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이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 결혼도 70년대에는 아주 낮게 나타나, 80년대에는 1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등 계절별 편차가 크게 줄었다.

IV. 結 論

사회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본다면, 결혼을 통한 가족은 원초적이며 결

Table 10. Percentage Distribution of Marriages by Bride's and Bridegroom's Educational Attainment;

Educational Attainment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ridegroom -Bride						
Primary -Primary	40.4	33.8	15.0	6.2	2.9	2.2
Primary -Secondary	1.3	1.7	2.4	2.3	1.6	1.4
Primary -College	0.0	0.0	0.0	0.0	0.0	0.0
Secondary-Primary	13.9	11.6	5.4	2.6	1.4	1.0
Secondary-Secondary	31.1	38.7	58.9	63.1	59.2	57.5
Secondary-College	0.3	0.4	0.5	0.9	1.5	1.7
College -Primary	0.2	0.2	0.1	0.1	0.1	0.0
College -Secondary	7.3	7.4	9.4	12.1	14.4	15.2
College -College	5.5	6.2	8.3	12.7	18.8	21.0

Note : Primary includes primary and never attending and college includes college and higher.

Table 11. Percentage Distribution of Marriages by Season(Month);

Month of Marriage	Year of marriage					
	1972	1975	1981	1985	1988	1989
Whol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5	26.6	27.7	30.6	31.7	32.3	32.8
6~ 8	7.2	9.1	10.0	11.0	10.9	10.3
9~11	26.5	24.2	25.5	24.2	25.8	27.3
12~ 2	39.7	39.0	33.9	33.1	31.0	29.6
Urba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5	31.2	30.5	31.7	32.3	32.5	33.3
6~ 8	9.9	11.3	11.5	12.0	11.6	10.7
9~11	25.0	24.8	27.0	25.7	26.9	28.4
12~ 2	33.9	33.4	29.8	30.0	29.0	27.6
Rur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5	23.8	25.6	29.2	30.5	31.6	31.7
6~ 8	5.6	7.5	7.9	9.0	9.3	9.0
9~11	27.4	23.6	23.7	21.8	23.2	24.4
12~ 2	43.2	43.3	39.2	38.7	35.9	34.9

Note : Place of residence is that of bridegroom's

속된 조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는 형성되고,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가 결부되어진다. 결혼은 사회구조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와 결혼형태의 변동은 인구변동의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매개변인의 하나로서 인구변동을 초래하며 여러가지 사회 및 경제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인과적인 관련을 갖는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던 산업화는 가족의 외적인 조건의 변화는 물론 가족기능의 역할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혼형태에도 영향을 주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호적법과 인구동태신고법에 의하여 국민이 신고한 혼인신고를 접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화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혼인형태가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혼인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혼인수는 주로 각 시대에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6·25동란으로 인한 저출산 그리고 전후 베이비붐 시기의 영향으로 1970년대 혼인수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변모하여 왔다. 그러나, 가족계획 세대인 1960년대 출생아들이 혼인적령기에 진입한 1980년대 후반에는 40만쌍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율 추이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 혼인수는 증가하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수는 남녀의 결혼을 통한 자연적 발생보다는 단독가구, 노인가구 등 비생산적인 가족의 증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사료된다(통계청, 1992).

혼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혼인에서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점차

재혼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혼비율의 증가는 산업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증가,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 및 경제력 향상과 자아의식의 성숙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이상을 위해서 가족을 쉽게 떠나는 경향이 증대되면서 가족의 해체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수절을 강조하던 전통유교 윤리관의 붕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재혼비율이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비록, 재혼비율이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혼의 증가와 전통관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재혼 특히 남녀 모두 가족을 가지고 결합하는 재결합 형태의 비율이 크게 증가될 전망으로 앞으로는 처녀·총각의 결합형태 외에 재혼결합 형태의 가족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기간의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는 초혼연령을 연장시켜 최근에는 남자는 28세, 그리고 여자는 25세 정도에 혼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만혼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교육기간 연장과 경제활동 참여가 많으며, 도시에서 집값 등 높은 생활비 마련 및 취업준비기간의 연장 등으로 혼인연령이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도시의 발달 특히 결혼적령기 인구의 도·농간 불균형 분포로 인하여 농촌에서도 초혼연령이 높아져 도·농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혼인연령과 교육정도는 정비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불취학자의 초혼연령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학교, 대학교 이상, 중·고등학교 으로 결혼연령과 학력간에 관계는 반비례 관계로 반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결혼조건으로서 크게 강조되어 저학력자일수록 배우자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연령조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4~5세 많던 것이 최근에는 3세 정도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연령차이는 최근에 그리고 초혼연령이 낮은 남자 또는 여자일수록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차이는 좁혀져 교육기회 연장이 동년배와의 교제기회를 통한 연애결혼을 증가시키면서 부간 연령차이를 감소시키고 있다.

성혼과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룰수록 교육기회의 연장과 취업기회의 확대에 따라 이성간의 접촉기회가 많아져 부부의 인연이 연애로서 맺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도시에서 결혼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모에서 결혼 당사자에게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매 후 어느 정도 교제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이 결정되는 연애혼과 중매혼의 절충 형태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근대혼에서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결혼조건은 가문 중심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격 등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그 중 교육정도는 중요한 결혼조건으로서 남자가 여자와 동일하거나 높은 학력을 소지한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결혼은 70년대 만해도 주로 겨울에 많이 결혼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봄에 결혼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이외 여름과 가을에 혼인하는 경우도 늘어나 계절간 변이성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사회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종래에는 노동력 유실과 혼인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인 겨울에 주로 혼인을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하여 최근에는 개인사정이나 기호에 따라 혼례시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혼인형태는 산업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많은 변모를 하여왔다.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력 감소와 이혼의 증가, 여성의 자립도 향상 등은 향후 혼

인수 감소 즉 출산능력을 가진 생산가족의 감소를 가져오며, 만혼경향은 자녀수 감소를 가져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더욱 더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창출과 함께 이들 자녀들의 정신적 대응문제도 사회문제로서 더욱 크게 부각될 전망으로, 향후 사회복지 정책에 심도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공세권 외, "인구 전환 3기에서의 가족계획사업", 인구보건논집 9(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획, 1986.9S
- 김유경 외, "결혼력 변동과 출산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총서87-05, pp84-134, 1987
- 서병숙 외, 인간과 가족, 동명사, 1986
- 이해영, 권 태환,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제3권: 지역사회, 구조와 가치, 서울대학교 인구문제 및 발전연구소
- 유영주, 가족관계학, 교문사, 1980
- 최신덕, "계층별로 알아본 결혼문제", 사회학논집, 1979
- 최재석, "촌락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 아세아여성인구 26,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1987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전수집계 결과, 1992
-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1991a
- 통계청, 한국인의 혼인 이혼실태(인구동태신고자료), 1991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변화, 1990
- Kim, Ill-Hyun, Choi, Bong-Ho, Lee, Sam-Sik,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Vol. 10, No. 1, pp. 56-8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July 1990
- Bongaarts, T., Bunch, T., and Watchter, K., Family Demography-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7
- Bumpass, L., "Age at Marriage as a Variable in Socio-Economic Differential in Fertility", Demography 6(1), 1969
- Burgess, E. W. and H. J. Locks, The Family, 1953
- Burgess, E. W., H. J. Locks, and M. M. Thomes, The Family, 4th ed., Van Nostrand Reinhold, Co., 1971
- Fawcett, J. T.,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Nuptiality,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International Union for Scientific Studies of Population (IUSSP) 2, 1974
- Kim, Y., "Age at Marriage and Trend of Fertility in Korea, " World Population Conference II, Published in New York, 1967
- Lee, Sam-Sik, Son Preference and Fertility: The Case of Korea, 1985, Unpublished Thesis of Master of Philosophy in Demography, UN-ARE Cairo Demographic Centre, Cairo, December 1989
- Song, Han-Kyu, Family Changes in Moderning Korea, Ph. 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 C., 1978

부록 Table 2. Estimates of Marriages (Cumulated Number of Marriages) by Year of Occurrence and duration Lapsed Since Its Occurrence for Registration ;

Duration Lapsed for Registration	Year of Occurrence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0 year	58,535	57,663	57,119	81,129	79,406	111,256	110,128	138,104	151,600	162,706	195,566
1	149,963	131,034	156,323	173,152	193,178	213,121	223,716	250,761	277,603	296,725	335,695
2	188,112	175,676	194,911	220,204	228,660	248,439	258,342	279,626	314,825	329,044	369,871
3	223,723	210,014	218,487	238,789	241,694	263,405	270,207	291,014	327,811	339,419	385,612
4	258,163	223,835	230,567	246,737	248,884	270,411	276,905	296,165	333,127	345,963	392,453
5	275,037	231,320	235,822	251,787	252,814	275,824	280,613	298,634	337,544	349,205	395,810
6	284,965	234,826	239,510	254,570	255,910	279,146	282,472	300,928	339,847	350,851	398,209
7	289,877	237,796	242,025	257,170	258,049	281,019	284,448	302,388	341,334	352,173	400,471
8	293,390	239,457	243,902	258,605	259,017	282,557	285,520	303,156	342,231	353,095	402,281
9	295,137	240,384	244,780	259,113	259,604	283,226	286,010	303,489	343,013	353,824	403,031
10	296,737	241,026	245,321	259,666	260,150	283,810	286,304	303,882	343,702	354,181	403,610
11	298,063	241,545	245,808	260,131	260,568	284,237	286,480	304,118	344,061	354,400	403,860
12	298,929	241,972	246,220	260,503	260,959	284,556	286,649	304,259	344,277	354,622	404,113
13	299,456	242,361	246,583	260,816	261,272	284,842	286,800	304,419	344,458	354,809	404,325
14	299,884	242,634	246,868	261,113	261,548	285,053	286,934	304,561	344,619	354,975	404,514
15	300,101	242,846	247,085	261,331	261,749	285,218	287,100	304,737	344,818	355,180	404,748
16	300,237	243,043	247,269	261,500	261,849	285,327	287,210	304,854	344,950	355,316	404,903
17	300,354	243,203	247,441	261,608	261,957	285,445	287,328	304,980	345,092	355,462	405,070
18	300,452	243,320	247,520	261,691	262,041	295,536	387,420	305,077	345,202	355,576	405,199
19	300,603	243,403	247,604	261,781	262,130	285,633	287,518	305,181	345,320	355,697	405,337
20	300,767	243,536	247,739	261,924	262,273	285,789	287,675	305,348	345,509	355,891	405,559

부록 Table 2계속

Duration lapsed for Regisrat	Year of Occurrence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0 year	199,763	240,305	228,464	252,407	265,115	272,731	282,060	296,179	309,872	312,319
1	321,774	326,004	337,918	334,370	348,620	353,477	355,790	368,119	377,482	380,463
2	347,120	346,947	355,056	348,264	362,767	367,408	366,937	378,106	387,723	390,785
3	355,288	353,181	380,175	353,309	368,953	371,820	370,728	382,012	391,729	394,822
4	358,588	355,966	363,337	356,760	371,892	373,875	372,777	384,124	393,894	397,004
5	360,484	358,177	365,969	358,591	373,680	375,672	374,569	385,970	395,787	398,913
6	362,188	360,169	367,249	359,734	374,871	376,870	375,763	387,201	397,049	400,184
7	363,859	361,261	368,260	360,724	375,903	377,907	376,797	388,266	398,142	401,286
8	364,525	361,909	368,921	361,371	376,577	378,585	377,473	388,963	398,858	402,006
9	364,889	362,270	369,289	361,732	376,953	378,963	377,850	389,351	399,254	402,407
10	365,413	362,791	369,819	362,252	377,495	379,507	378,393	389,910	399,828	402,985
11	365,639	363,015	370,048	362,476	377,728	379,742	378,627	390,151	400,075	403,234
12	365,869	363,243	370,280	362,703	377,965	379,980	378,864	390,396	400,326	403,487
13	366,061	363,434	370,475	362,894	378,164	380,180	379,064	390,602	400,536	403,699
14	366,232	363,603	370,648	363,063	378,340	380,358	379,240	390,784	400,723	403,888
15	366,444	363,814	370,862	363,273	378,559	380,578	378,460	391,010	400,955	404,121
16	366,584	363,953	371,004	363,412	378,704	380,723	379,605	391,159	401,108	404,276
17	366,735	364,103	371,157	363,562	378,860	380,880	379,762	391,321	401,274	404,443
18	366,852	364,219	371,275	363,678	378,981	381,002	379,883	391,446	401,402	404,572
19	366,977	364,343	371,402	363,802	379,110	381,132	380,012	391,579	401,539	404,710
20	367,178	364,543	371,605	364,001	379,318	381,340	380,220	391,793	401,759	404,931

<Abstracts>

Analysis on Change in Korean Marriage Behaviors

Sam-Sik Lee

(Population Statistics Divis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recent change in marriage behaviors in Korea. The data used here is the vital statistics compiled from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of which registration form is put on one form together with the civil registration 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ince 1970 the number of marriage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about 300,000 in the former of 1970s to about 400,000 in the latter of 1980s, approximately coincided with the change in population size at the marriageable age span. The few exceptions that can be seen in the 1970s seem to result from the impact of social upheavals during 1950s; since the birth cohorts affected by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baby-boom generations characterized by the high fertility entered the marriage market in the 1970s. However, the marriage rate shows a little increase from around 7 in the former of 1970s to around 9 in the latter of 1980s, indicating that the marriage prevalence has been more or less inconsiderably changed during this period.

It is also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 to the total marriages has increased to around 10 per cent in 1989, while decreasing that of first marriage. This fact can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prevalence of divorces and the collapsing of the Confucianism ethic which contributed to expediting the remarriage of widows. Although this proportion is insignificant compared with that of the more developed countries, it is not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age at first marriage (AFM) which directly affects the span exposed to the risks of pregnancy has increased to the age about 28 for male and about 25 for female in recent years. However, big difference in AF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narrowed, resultant from the increasing involuntary postponement of marriage of rural young population who have met difficul-

ties in seeking their bride or bridegroom in rural areas characterized by the heavy out-migration of young, particularly female,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e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AFM and educational attainment; i.e., the high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lower the AFM.

The condition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as important were the class and the family in the past time but which are age,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age condition, in recent years the male prefers the female younger than himself on the average by 3 years and vice versa, which is reduced from 4-5 years in the beginning of 1970s. The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tends to decrease with the educational attainment increase.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persons with th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prefer the love marriage and hence are more likely to choose their counterparts in the about same age. The education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bridegroom having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the bride.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love marriage has increased, whereas that of traditional arranged marriage has decreased. This is true in the urban areas than the rural areas, indicating that righ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for marriage have been handed over the young population from their parents.

In conclusion, the change in the marriage behavior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tendency for the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higher prevalences of divorces and as a result remarriages, increase of love marriages, narrowing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etc. which are the main results of rapid industrialization, increase in educational and economic activity opportunities and change in the ideals of marriages during the past decades. These phenomena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would affect not only the family structure that will become less proliferated but the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changes in marriage behaviors of Koreans and their impact on the society with respect to norms, values, morals,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he social aspects, change in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in the demographic aspe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sp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plannings towards to the future.